

제20.2호

행정명령

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전파 지속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

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2022년 7월 23일을 기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기 **때문에**,

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로 인해 2022년 7월 28일을 기해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공중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(Imminent Threat to Public Health)로 선포했기 **때문에**,

2022년 9월 27일 기준 뉴욕주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이 3857건 발생했기 **때문에**,

지역 보건부가 조사 지원, 접촉자 확인 및 관찰, 노출된 접촉자 및 현재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, 교육, 봉사 등을 통해 원숭이두창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**때문에**,

뉴욕주 정부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질병이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, 지역, 카운티에 지원해야 하기 **때문에**,

따라서 이제 Kathy Hochul 본인은 뉴욕주의 주지사로서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을 기초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제20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행정명령 제20호까지에 포함된 조항, 조건 및 증지를 다음의 개정안이 계속 적용되는 조건에서 2022년 10월 27일까지 계속 연장합니다.

- 비환자 대상 명령에 따라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승인 약사가 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0조에 포함된 내용처럼 약사가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, NYCRR 8장 63.9조를 임시 개정.
- 비환자 대상 명령에 따라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약사 및 승인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방을 위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0조에 포함된 내용처럼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27조 세칙6항, 공공보건법 제6909조 세칙4항, NYCRR 8장 제64.7조에 대한 임시 개정.

2022년 9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정부
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